우리나라 경비업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김 정 환*

◇ 목 차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경비업의 발전과정
Ⅲ.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우리나라 경비업은 1954년에 미 8군경비를 위해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한 것이 최초로, 이제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1976년 12월 용역경비업법 제정이후 금년까지 꼭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황무지를 개척하였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지나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비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므로써 미흡하나마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비산업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 범아공신 고문

다. 그러나 경비업 수입개방을 앞두고 여러가지 발전에 저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고쳐 나가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의 경비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기서 선진국의 발전된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 일본도 미국의 경비문화를 받아들여 50년대부터 60년대에 일본식 경비문화를 소화시켜 70년대에 정착되면서 80년대 이후는 일본식 경비문화가 아시아 8개국(18개 경비회사)에 진출중이어서 아시아 국가는 이제 일본의 경비무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교훈을 본 받아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과감히 시정보완 해야만 우리나라의 경비업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생각된다.

Ⅱ. 우리나라 경비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업의 원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의 경비문화로 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미군 참전의 계기가 되고 휴전후 1954년 7월 주한 미군과 군납 경비가 계약이 됨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거 미국회사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1962년 5월 11일에 코스코(KOSCO) 일명 대한석유저장(주)과 경비계약 체결, 1963년 2월에는 플루오(FLOUR)와의 울산 정유공장 건설공사 경비계약 체결, 1963년 3월에는 벡텔 인터내셔날(BECHTEL-INTERNATIONAL)의 부산 감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비계약이 됨으로써 미국의 경비제도가 전수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민간경비 역사는 이미 1890년 핀카톤(PINKERTON)에 의해 시카코 중서부 6개 선로철도회사의 경비용역을 시발로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비문화는 경비 대상물이 있으면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다가 1970년 하반기에 와서 일본의 경비문화와 서서히 접촉되면서 활기가 가속화 되어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시발에 큰 영향을 주게되었고 드디어 1976년 12월 31일

에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본격화 되었다.

일본 경비업의 원류도 미국으로 부터 도입되었다. 1945년 8월 점령군의 진주로 사령부 및 숙소의 건물과 시설물도 거의 일본의 건물관리 및 경비업자에게 용역함으로써 한때 경비업은 젊은 사람의 인기직업으로 가드맨(GUARD MAN)이라 하여 경비원을 호칭하고, 일본식 경비업무로 경영이 정착화 되면서 뿌리가 내려 하루 아침에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직업으로 되어 갔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경비문화는 미국 및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1976년도에는 경비업자가 9개회사였고, 경비원수는 5,022명에 이르렀다.

20년이 지난 1995년 12월 말 현재 경비업자는 93배인 833개 회사로, 경비원수는 8배가 증가한 40,109명으로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표 1 참조>.

경비업무별로 보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인력경비가 주업무였고, 80년대 중반부터 기계경비가 등장되어 오늘 현재 기계경비 대상시설물은 130,000개처로 늘어나 앞으로도 계속 발전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제도적으로 보면, 용역경비업법은 작년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되어 외형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법으로, 금년 7월 1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7월 15일에는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계경비 분야별로 활성화 되었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제도가 신설되어 강습교육도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되었고, 내년부터는 경비현장에 우수한 인재들이 배치되어 경비원 교육과 지도감독이 활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경비업이 진일보 하리라고 본다.

1989년 12월 17일에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91년 3월 26일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경비업도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로 90년까지는 매년 지방 보다 서울에 경비회사가 집중 되었으나 91년 부터는 서울보다는 지방에 경비회사가 늘기 시작하였고 93년 6.27선거를 계기로 작년 말에는 지방 소도시 및 군. 읍 소재지까지 확산 평준화 되면서 경비업의 지방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면 보다 세부적으로 년대별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1950년 - 1960년대 민간경비의 태동기

1954년 7월 대한상이군인회 산하 용진보안공사(대표 유화열)가 미 8군과 경비계약이 이루어지므로써 군납경비는 서서히 질서가 잡혀갔고 62년 상공부에서 군납촉진법을 제

정, 보조금이 지급되어 군납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당시 군납은 외화획득의 유일한 길로써 군납은 곧 수출이며, 1957년에 1천3백만불에서 69년에는 8천8백만불로 1970년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할 때 까지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1958년 2월 국내기업으로서 범아실업공사(대표 윤관)가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하여 1962년에는 한국석유저장(주) 일명 KOSCO와 경비계약, 1963년에는 미국회사 플루오(FLOUR)와 울산 석유공장 건설공사에 대한 경비계약, 같은 해 미국회사 벡텔 인터내셔날(BECHTEL INTERNATIONAL)과 부산 감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경비계약 등이 체결되어 우리나라 경비문화는 미국이 원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8년 1. 21 무장공비의 도발 등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므로써 중요시설경비는 방위 또는 방호의 개념으로 바뀌어 갔다.

2. 1970년대 민간경비의 성장기

중요시설의 경비가 방위 또는 방호업무로서 무기의 휴대는 청원경찰을 필요로하게 되어 경비회사에서의 청원경찰 용역이 이무렵 부터 시작되었고, 1976년 경찰력 증강의 일환책으로 준경찰력의 확보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므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골격이 되는 법률로 국민으로 부터 큰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1978년 경비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민간경비업이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고 경비업무도 다양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3. 1980년대 민간경비의 발전기

1980년대에 와서는 일본의 경비문화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 경비회사와 기술 및 업무제휴를 조건으로 일본의 세콤, 종합경비보장 센트날 경비보장, 전일경(全日警) 등 일본의 경비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본격적인 한. 일 경비문화 교류를 계기로 경비의 비중이 인력경비에서 기계경비로 바뀌게 되어 기계경비는 즉응체제로서 국민으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198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의 행사장 경비, 1983년 프로야구단(MBC)의 스포츠경비, 세계 161개국이 참가하는 88서울올림픽 경기장 경비 등을 대과없이 완수 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해 주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는 민간경비의 영역을 넓히고 경비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4. 1990년대 민간경비의 도약기

1990년에 경비협회부설 연구소의 설치는 산학관이 협동하여 경비산업을 발전하는데 기초를 마련했고, 이어서 1992년에는 동국대 서재근 교수가 일본의 『도시방범센터』 초청으로 민간경비업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되었고, 1991년, 1994년의 한국방범기기전시회 개최는 기계경비 분야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1995년에는 『아시아 경비업자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일본경비문화에서 국제경비문화로 승화하는 큰 뜻이 있었다.

1995년 용역경비업법 개정으로 신변보호업과 경비지도사제도가 도입되고, 1996년 3월에는 『한국경호경비학회』가 창립되므로써 경호경비에 대한 학문적인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무튼 2천년대를 앞두고 있는 1990년대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경비산업으로 육성되고 민간경비의 강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Ⅲ.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

1. 경비원이 없는 경비회사의 증가

90년대에 와서 경비회사가 급격하게 증가 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4>, <표 5>에서 보다시피 92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회사가 372개 회사에서 95년에는 691개 회사로 허가되어 319개 회사가 증가(약 68.6%) 되었으나 경비회사 상품인 경비원은 31,341명에서 40,109명으로 9,109명의 증가(27%)를 보이므로써 경비원 증가율 보다 경비회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점이다<표 3참조>.

보유 경비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0-20명을 보유하는 회사가 174개 회사에서 356개 회사가 증가된 530개 회사로 136.0%가 증가된 반면에, ② 20명-100명을 보유한 회사는 144개 회사에서 118개 회사로 26개 회사가(19.3%) 감소되었고, ③

100명 -200명을 보유한 회사는 23개 회사에서 17개 회사로 6개 회사가(27.9%) 감소 되었고, ④ 200명-300명을 보유한 회사는 12개 회사에서 8개 회사로 4개 회사가(35.4%) 감소되었다. 그리고 ⑤ 300명-3,000명을 보유한 회사는 19개 회사에서 18개 회사로 1개 회사가(5.3%) 감소되었다.

이상과 같이 경비업은 알맹이가 없는 발전으로 점차 영세화 되고 있어 앞으로 경비업의 개방을 앞두고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문제점을 다음 세가지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신규회사는 매년 23% 증가하는 반면 경비원의 증가는 8.5%에 불과해 경비회사는 과잉상태로 기업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100명 이상의 중견회사가 3년간 24.2%로 감소되고 있는 것은 신규회사의 설립이 새로운 경비 수요가 아니라 기존회사의 영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신규회사는 결국에 가서는 별 반전이 없이 공신력만 실추시키고 2. 3년이 지나면 전철을 밟아 도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의 중복

1976년 법 제정 이전 부터 일부 경비회사는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을 청원경찰 용역으로 경비해 왔다. 당시는 탈법이라 하여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청경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9조(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가 규정되어 용역경비회사는 이 조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청경용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치안본부에서도 이 법 조항에 대한 해석도 적법이라 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1)]

1988년 6월 22일 치안본부의 회신 공문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청원경찰이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규정 취지는 소위 경비분야 업무 등은 전문화. 체계화 된 경비회사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하였다.[2)]

---

1) 청원경찰을 용역경비업자에 위임할 수 있는 법 조항(용역경비업법 〈1976. 12. 31. 법률 제2946호〉 과 동법 시행령 〈1977. 6. 30〉 의 제정공포) 제9조(중요시설 등의 용역경비)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용역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비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 및 감독의 권한을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요시설의 용역경비는 용역경비업법 제정시에 동법 제1조(정의)에서는 시설경비업무에 국가중요시설의 경비가 포함되었고 동법시행령 제9조(중요시설등의 용역경비)에서도 "효율화를 위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 및 감독의 권한을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한다"고 하여 청원주(시설주)로부터 용역경비계약은 하자 없이 당시 치안본부 해석이 명확하였다.

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의2(근무배치의 위임)에서도 용역경비회사가 청원경찰을 근무배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었다.[3]

그러나 94년 3월 22일의 경찰청 공문은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현행법대로 근무배치 및 감독은 도급받은 경비회사가 실시하고 임용, 신분관리, 급여는 청원주(시설주)에게 환원하라』는 것이었다.[4]

그렇다면 경비회사는 근무배치나 감독으로 도급이 가능하느냐가 문제점이다.

불가능함으로 결국 기 경비를 하고 있는 계약처는 해약이 되고 청원경찰의 용역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5]

---

2) 청원경찰을 용역경비회사에게 용역가능하다는 회신내용 "따라서 정당한 보수가 사업장 직원 보수지급일에 근무 및 감독권한이 있는 용역경비업체를 통하여 지급되어도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내무부 경비(2) 02642-2079, 88. 6. 22) "따라서 정당한 보수가 사업장 직원 보수지급일에 근무 및 감독권한이 있는 용역 경비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여도 동 규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내무부 경비(2) 0125, 87. 6. 11)

3)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의 전문개정과 청원경찰법시행령(1980. 5. 8.)제19조의2 규정의 신설 ① 용역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용역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청원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0. 6. 28〉

4) 경찰청장이 청원경찰 운영 건의에 대한 회신사항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현행법에 정한대로 근무배치 및 감독은 도급받은 용역경비업자가 실시하고 임용 등 신분관리 봉급 및 제수당 지급은 청원주에게 환원하여야 합니다."(경비63410, 94. 3. 2)

5) 이 문제는 동국대 이윤근 교수가 1992년에 발표한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 및 단일법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와 1994년 제2회 치안정책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민간방법 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 방안」에서도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에 의한 이원화 운영 체제와 개선방향이 거론된 바 있다.

3. 공동주택의 관리와 용역경비업무의 이원화

우리나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는 분명히 주택경비 업무는 시설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5년후인 1981년 10월 15일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시행되면서 사항이 달라져 공동주택관리업자가 동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 2호에 공동주택 단지내 경비업무가 포함됨으로써 이원화가 된 것이다.[6] 여기서 경비업무 영유권 문제가 대두되어 복잡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이원화가 되었는가이다. 1981년 시행령 통과 당시 내무부와 건설부와의 사전토의 결여와 건설부의 용역경비업무에 대한 비전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상호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정을 하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혼선이 없었을 것이다.

때 늦은감이 있더라도 잘못된 법령은 수정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에 환원하여 주택 경비업무를 일원화·원활화 하여 경비업 발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7]

4. 방범기기 제조업체의 발전 저조

경비시설에 관한 기준은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4조(기계경비시설의 기준) ① 전문인력은 전기통신 2급 이상의 기능자격자 5명 포함 10명이상, ② 장비는 송신기·수신기·감지기·단말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계경비의 발전은 바로 방범기기의 발전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방범기기의 종류·생산·판매·유통·설치 등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계경비의 발전은 물론 경비산업의 발전과 내년도 시장개방에 있어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6) 참고로 주택경비업무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용역경비업법 제2조(정의) : 시설경비업무란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등 장소에서 도난 화재 방지업무"
② 주택건설촉진법(1977. 12. 31)과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 :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내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③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경비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년 2회이며 매월 4시간 초과할 수 없다."

7) 우리나라 총 주택은 7,935,897 가구인데, 전국 도시 주택형태의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43.9% 3,489,315 가구, 공동주택 56.1% 4,446,582 가구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을 말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경비원도 약40,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내무부 발행 95년 표시연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계경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범기기를 취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급에 기술이 요함으로 기능사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1992년에 『防犯設備士制度規程』을 제정하여 『防犯設備士』 자격증 소지자가 1995년말에 이미 3,000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수백명이 응시 합격하고 있다.

둘째, 방범기기 제조업체의 파악과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육성이 시급하다. 방범기기의 생산업자를 등록받아 국가에서 관리육성 하여야 기술발전과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방범기기의 규격화. 표준화를 기하여 외국과 경쟁하는데 손색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장조사가 없어서 품명·규격·가격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국내생산의 가능품도 고가로 외국에서 수입 판매되는 실정이다. 또한 기계정비에서 필요한 송신기·수신기·감지기·단말기 등의 장비에 대한 품질과 가격은 기계경비업무의 경비료와 즉응체제에 있어서 오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범기기 제조업체의 관리와 육성은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1986년 일본에서는 이미 防犯設備協會가 설립되어 120개 회사가 가입, 공동이익을 위하여 우수한 방범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회사로 성장되어 경비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방범기기 시장의 규모를 보면 <표 4>와 같다.

5. 용역경비업의 제도적 미흡

우리는 1995년 법개정으로 경비지도사 제도에 큰 비중을 두어 경비원 교육 및 지도감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경비업법과 우리의 용역경비업법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일본 경비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개발하여야 할 경비업무가 눈에 띈다. 즉 **교통경비업무** 또는 **교통유도경비업무**라고 하는 경비제도이다.

일본의 경비업자 전체 8,154개 회사 가운데 50.2%를 점유하는 4,093개 회사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하고 있으며 검정합격자의 전체 34,000명 가운데 77%인 27,092명이 교통유도경비검정 합격자이고 보면 일본의 경비업의 주업무가 바로 교통경비이다.[8]

---

8) 일본의 최근 경비업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12월말 현재 경비업자 수는 8,154개 회사이며 경비원수는 358,415명이다. 경비업법시행시인 1972년 11월 1일 당시 경비업자는 775개 회사, 경비원수는 41,146명이었으나 1995년 경비업자

우리나라 교통실정을 보면 교통정책 및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교통부이고 경찰청은 교통행정의 일부인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데 있다면 우리의 민간경비도 경비업무에서 교통경비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유량 1천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자동차는 년 평균 23%의 증가 추세에다가 교통사고도 세계에서 1위 내지 2위인 26만 6천여 발생건에 10,087명의 사망을 보여주고 있어 주요 선진국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 가장 많다는 오명을 갖고 있다.[9]

1994년 경찰청의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예산도 243억원으로 1993년 보다 72%가 증가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봉사단체도 많으나 우리는 수익자 부담으로 교통경비 업무를 개발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지하철·공항·항만·도로·주택단지의 건설현장. 유원지·공원·행사장·주차장 기타 혼잡장소 등에서 교통경비를 실시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될 것이 분명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순시원. 주차장관리 등 분야까지 진출할 경우에는 민간경비는 2만명 내지 3만명의 경비원의 고용효과를 보게되고 기계경비 분야와 같이 가장 유망한 직종이 될 것을 확신한다.

미래 지향적 경비는 우리의 손으로 개발하는 것이 뜻있는 일일 것이다.

는 10.5배로 경비원수는 8.7배로 각각 늘어났다.

경비업무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부터 일반주택에 이르게 되고 주로 시설경비, 순회경비, 교통 유도경비, 현금, 핵, 연료물질운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타 행사장경비 등 폭넓은 분야을 경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통유도경비는 업자가 4,093개 회사로 전체의 50.2%, 종사경비원수 140,272명으로 제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 순회경비의 업자도 729개 회사가 있다.

전체경비원 중 검정합격자도 32,683명이고 매출액도 2조3천 511억엔, 즉 원화로 약 17조 6천 2백억원이다.

또한 해외진출 업체도 동남아 국가에서는 대만,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8개국에 18개 업체 25개 지역에 진출하고 있어 동남아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약 80%를 점하고 있다.

9) 1995년 경찰백서에서 인용.

Ⅳ. 결 론

이상에서 우리의 민간경비 발전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민간경비 역사는 결코 짧은 역사는 아니다. 법제정 년수는 일본보다 4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소득으로 볼 때도 1995년에 우리는 1만불 이었고 이 국민소득은 일본에서는 11년전인 1984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민간경비도 일본을 추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산업계, 학계, 관계 등 각 분야의 민간경비에 뜻 있는 분께서는 좀 더 유기적으로 정책, 기능,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동남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충분히 진출될 것이다. 또 내년 수입 개방을 앞두고 우리는 민간경비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과감하게 정리, 정비하여야 새로운 경비문화를 창출하면서 경비산업의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우리 업계가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그 중 몇 가지만 발표했으나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연구가 아쉽다. 모든 정책주관 부서에서 발의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관계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비업은 이제 경비업 종사자, 관련학교, 특정한 관련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치안은 예방범죄에서 생활안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안전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용역 경비원 및 경비업체 연도별 증가현황

구분 \ 년도	76	77	78	79	80	81	82
경비원 수	5,022	5,484	4,876	5,012	5,632	5,800	6,396
(지수 %)	(100)	(109)	(97)	(99)	(112)	(116)	(127)
년차별 증가 %		9.2 %	-11 %	2.7 %	12.3 %	2.9 %	10.2 %
경비 업체수	9	11	13	15	18	24	30
(지수 %)	(100)	(122)	(144)	(166)	(200)	(266)	(333)
년차별 증가 %		22.2 %	18. 1%	15.3 %	20 %	33.3 %	25 %

구분 \ 년도	83	84	85	86	87	88	89
경비원 수	7,812	8,631	10,873	12,625	16,078	19,455	21,990
(지수 %)	(156)	(172)	(217)	(251)	(320)	(387)	(438)
년차별 증가 %	22.1 %	10.4 %	25.9 %	16.1 %	27.3 %	21 %	13 %
경비 업체수	37	39	71	89	109	150	160
(지수 %)	(411)	(433)	(789)	(989)	(1,211)	(1,667)	(1,778)
년차별 증가 %	23.3 %	5.4 %	82 %	25.3 %	22.4 %	37.6 %	6.6 %

구분 \ 년도	90	91	92	93	94	95	96
경비원 수	25,559	29,000	31,341	37,067	40,223	40,109	
(지수 %)	(509)	(577)	(624)	(738)	(801)	(799)	
년차별 증가 %	16.2 %	13.4 %	8 %	18.2 %	8.5 %	-0.2 %	
경비 업체수	294	320	420	539	690	833	
(지수 %)	(3,267)	(3,556)	(4,667)	(5,989)	(7,667)	(9,256)	
년차별 증가 %	83,7 %	8.8 %	31.2%	28.3 %	28 %	20.7 %	

<참고> 1976년 - 1989년:경비협회 자료, 1990년-1994년:경찰청(경찰청백서) 자료참조

<표 2> 지역별 연도별 경비업체 현황(1977 - 1989년)

년 / 지역별	70 년				1980 년 대											(77~89) 년 허가업체
	77	78	79	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계	
서울	3	7	1	11	2	5	5	1	9	8	19	14	20	34	117	128
지방						1	3	2	2	4	1	9	8	25	55	55
釜山						1	2	1		2		1	2	5	14	14
慶南										1		1	1	2	5	5
大邱									1		1	1	2	4	9	9
慶北														2	2	2
仁川														3	3	3
京畿							1						2	3	6	6
光州								1				2		1	4	4
全南												1			1	1
全北									1					1	2	2
大田										1		2		3	6	6
忠南												1		1	2	2
忠北																
江原													1		1	1
濟州																
合計	3	7	1	11	2	6	8	3	11	12	20	23	28	59	172	183

<표 2> 지역별 연도별 경비업체 현황 (1990- 1995년)

1995. 12.31 현재

년 / 지역별	70년~ 80대	1990년 대 (연도별)							95 년 허가업체
	계	90	91	92	93	94	95	계	
서울	128	47	29	22	62	81	77	318	446
지방	55	36	32	39	67	72	86	332	387
釜山	14	5	5	8	13	15	16	62	76
慶南	5	1		3	8	8	6	26	31
大邱	9	7	6	3	5	8	10	39	48
慶北	2	1	2	3		1	2	9	11
仁川	3	5	2		4	2	3	16	19
京畿	6	6	3	7	17	12	17	62	68
光州	4	1	2	2	2	5	4	16	20
全南	1	2	2	3	2	3	4	16	17
全北	2		2	1	3	3	5	14	16
大田	6	5	2	5	5	8	7	32	38
忠南	2	2	2	1	3	1	4	13	15
忠北		2	1		3	4	6	16	16
江原	1		1	2	1	1	2	7	8
濟州			1	1	1			4	4
合計	183	83	61	61	129	153	163	650	833

<표 3> 우리나라 연도별 경비회사 증감표

(1) 업체수별

기준 \ 구분		업체수				
		92 년	93 년	94 년	95 년	92년 기준 34년간 증감수
		372 사	464 사	550 사	691 사	+ 319 사
인원 0 -20명	시설 0 - 100개	174	284	386	530	+ 356
21 - 50 명	100개 - 200개	97	91	85	83	- 14
51 - 100명	201개 - 300개	47	41	36	35	- 12
101 - 200명	301개 - 500개	23	19	17	17	- 6
201 - 300명	501개 -1,000개	12	11	8	8	- 4
301 - 500명	1,001개-1,500개	5	4	3	4	- 1
501 -1,000명	1,501개-2,000개	8	8	9	8	0
1,001 -2,000명	2,001개-3,000개	5	5	5	5	0
2,001 -3,000명	3,001개-4,000개	1	1	1	1	0

(2) 회사규모의 증감율

연도별 / 인원별	92년		93년		94년		95년		92년기준 3년간 증감율
	회사수	증감율	회사수	증감율	회사수	증감율	회사수	증감율	
전체	372	100%	464	24.7%	550	18.5%	691	25.6%	68.8 %
20명 미만	174	100%	284	63.2%	386	35.9%	530	37.3%	136.0%
20명 이상 ~100명 미만	144	100%	132	-8.4 %	121	-8.4 %	118	-2.5%	-19.3%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3	100%	19	-17.4%	17	-10.5%	17	-	-27.9%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2	100%	11	-8.4 %	8	-27.3%	8	-	-35.4%
300명 이상 ~3,000명 이하	19	100%	18	-5.3 %	18	-	18	-	-5.3 %

*1992년을 기준으로 1995년까지 회사수가 319개 회사로 증가(연평균 22.9%)된 것임.

<표 4> 일본의 방범기기의 시장규모 (총매출고)

방범기기 종류	년 도	금 액 (억엔)	성장율 (%)	구성비 (%)
감지기	93 년	170	91.4	6.6
	94 년	142	83.5	5.3
	95 년	158	111.3	5.3
감시장치	93 년	530	98.6	20.5
	94 년	512	96.6	19.1
	95 년	563	110.0	19.0
주택정보시스템	93 년	200	54.8	7.7
	94 년	210	105.0	7.8
	95 년	214	101.9	7.2
출입 관리장치	93 년	112	86.2	4.3
	94 년	176	157.1	6.6
	95 년	194	110.2	6.5
영상 감시장치	93 년	700	104.5	27.0
	94 년	744	106.3	27.7
	95 년	870	116.9	29.3
일반 방범기기	93 년	876	143.9	33.8
	94 년	900	102.7	33.95
	95 년	970	107.8	32.7
합 계	93 년	2588	99.8	100.0
	94 년	2684	103.7	100.0
	95 년	2969	110.6	100.0

제 공 : 일본 방범설비협회. 1995년은 추정액

<표 5> 한국과 일본의 용역경비업법 비교

구 분	용역경비업법(제정 1976년 12월 31일 5차개정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제정 1972년 10월 13일 2차개정 1982년 7월 16일)
목 적	이법은 용역경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역업무 실시에 적정을 기함	이법은 경비업에 대한 필요한 규제를 정하고 경비업무 실시에 적정을 기함
정 의	용역 경비업이란 전부 및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 1) 시설경비 업무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유원지,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위험발생 방지업무 2) 호송경비 업무 운반중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물건 도난 화재 방지업무 3) 신변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 방지 및 신변보호 업무 4) 기계경비 업무 기계경비 시설을 송신기, 수신기, 감지기, 단말기 설치하는 시설경비 업무	경비업무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해서 행하는 것 1) 시설경비 업무 사무소, 주택, 흥행장, 주차장, 유원지 등에 있어서 도난사고 발생을 경계 방지 2) 교통경비업무. 교통유도경비 혼잡장소(사람 및 차량)의 교통정리,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람과 차량의 교통유도 업무 3) 수송경비 업무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 도난 방지 업무 4) 신변보호 업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업무 5) 기계경비 업무 경비업무용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의 경비업무
업체제한	법인 아니면 영업 할 수 없음	법인 및 개인 다 가능함
허 가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제	공안위원회(경찰서)의 인가제 (유효기간 5년)

감 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를 적정히 실시하기 위해 업자 및 경비지도자를 지도 감독	총리령에 따라 업자의 경비원명부 보고, 출입하여 검사하며 기타 지시사항 등을 적정한 실시
결격사유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는 파산선고자로 미복권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형 받은자 경비원은 18세 미만자, 파산선고자로 미복권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받고 5년 미경과자	경비업무 종사자는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파산선고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형 및 벌금형 처한 날로 부터 5년 미경과자, 최근 5년간 법률·규정·부정행위자, 집단적·상습적·폭력적 부정행위자
복 제	형식 색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전 승인제를 하고 경찰, 군인의 복제색상과 명확히 구별된 복장	색상 형식을 사용시 제출 국가공무원과 명확히 구별된 복장
손해배상	경비원이 업무 수행중 고의 과실 발생시 배상, 손해배상은 현금·유가증권·공탁·보증보험·기타 준하는 공제금으로 하고 경비원에게 구상권행사	쌍방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가입한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함
기계경비	기계경비시설은 경비업무수행시는 장비로서 송신기·수신기·감지기·단말기 2대 이상, 차량, 전기, 통신분야 2급이상 기능직	기계경비업은 수신기기(기지국), 송신기기(대상시설)을 말함
경비 지도사	1) 자격 30세 이상자,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된 자 2) 직무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순회 점검 및 감독	1) 자격 적격자 인정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강습에 관한 규칙에 의거 2) 직무 경비원의 지도에 관한 계획 작성, 교육계획서 작성, 교육실시 관리에 관한 기록 및 기재 감독, 경비원 지도 교육 사항을 경비업자에게 조언

교 육	신임 교육은 용역경비업자가 협회에 위탁 실시(15시간)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 (매월4시간)	경비원 교육은 기본교육으로서 지도 교육 책임자 및 당해 교육에 지식 경험이 있는 자가 함 신임교육(기본) 15시간 직무교육(업무별) 매월 3시간
검 정	없 음	경비지식 및 능력에 관한 검정 (제11조 검정)명시 공항보안경비, 교통유도경비, 핵연료 물질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 등 4종류로 1. 2 급이 있음
협 회	법에 의해 설립 경비업 허가자의 의무적 회원, 지방에 4개지회가 있음 (지회운영규정에 의함)	협회는 임의 단체로 아무 구속력이 없으며 전국에 45개 협회가 현 (우리나라도 해당)이상에 소재 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 경찰대학, 경찰방범론, 경찰대학, 1992.
-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1996.
- 김두현, 경호학개론, 쟁기, 1996.
- ——, 경호경비법, 와이제이, 1996.
- ——, 우리나라 경호제도의 사적고찰을 통한 현행 경호행정조직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995.
- 서재근, 한국경비업무의 현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논총, 제10집, 1983.
- 이윤근, 민간경비론, 공안행정연구원, 1996.
- ——, 한국사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정진환, 미국의 경비산업연구, 인천대학 논문집 제12집, 1988.

ABSTRACT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oints of a Private Security in Korea.

By Kim, Jung Hwan

The private security has forty years history and it seems not to have points in exteriors. But it has many points in interior. If these points improved, our private security can develop.

I discuss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 Chapter 2 and the points in Chapter 3, and conclude in the last Chapter. If we follow the precepts, and develop a good points and improve a week points, the future of our private security will be better.